환경부 공고 제2010-145호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년 4월 26일 /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수입 폐기물의 부적절한 국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반 · 처리에 따른 인계 · 인수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법 · 절차 ·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폐기물 인계 · 인수내용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내용 · 방법 · 시기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의2 신설)

(1) 수입 폐기물의 수입 · 운반 또는 처리 과정의 실시간 감시를 위해서 인계 · 인수 내용을 수입자, 운반자 및 처리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토록 함.

(2) 수입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방지 효과가 기대됨.

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능한 업무(안 제12조의3 신설)

(1) 국내 사업장폐기물도 폐기물 배출자 신고 등의 업무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토록 함으로써 배출자 및 처리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2) 법적으로 의무화 되는 수입 폐기물의 인계 · 인수내용 입력 외에도 수출입(변경)허가 신청서, 폐기물 수출 실적 보고서 제출 등의 수출입 관련 업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다. 폐기물수출입 상황 등의 기록과 보존(안 제19조의2 신설)

(1) 폐기물 수출 허가를 받은 자 등으로 하여금 폐기물 수출입 · 운반 · 처리 상황 등을 장부에 기록 · 보존토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도모함

(2) 다만, 상기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록 · 보존을 면제토록 함으로써 이중부담을 해소함

환경부 공고 제2010-138호

야생동 · 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0년 4월 21일 / 환경부장관

1. 제정이유

야생동 · 식물 포획 · 채취금지 등 보호위주에서 보호 · 관리로의 정책기조변화를 반영하여 법 제명을 변경하고, 포획금지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는 보상을 하지 못함에 따라 보상의 형평성 저해 및 농약 등 독극물을

이용한 밀렵원인 등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피해보상범위에 포획금지 야생동물을 포함하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등을 상습적으로 포획하는 자에 대해 벌칙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 · 치료 외에 질병연구를 위한 법적근거 및 소요비용 지원근거 마련(제11조)

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범위를 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시 · 도 보호야생동물 외에 포획금지 야생동물까지 확대(제12조)

다. 국가 고유사무인 생물자원보전시설의 등록 등 3개 사무와 야생동 · 식물특별보호구역의 관리기능 4개 사무를 국가 및 시 · 도 공동사무로 이양(제28조부터 제30조, 제32조 등)

라. 시 · 도지사 지정 '시 · 도야생동 · 식물보호구역', 시장 · 군수 · 구청장 지정 '야생동 · 식물보호구역'을 '야생동 · 식물보호구역'으로 일원화(제33조 및 제34조)

마. 멸종위기야생동물 I 급의 상습 불법포획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으로, 멸종위기야생동물 II 급의 상습 불법포획, 포획도구 설치 또는 농약 살포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등 벌칙강화(제67조, 68조 및 제6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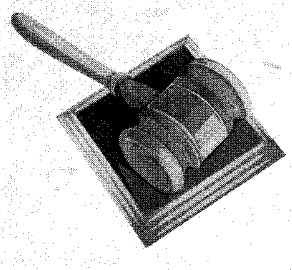

환경부 공고 제2010-13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년 4월 15일 / 환경부장관

1. 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152호 '10. 3. 22. 공포, '10. 6.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배출부과금의 이의신청기간 연장,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있는 징수 유예기간 및 분할납부 횟수를 영구적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 규정을 법률에서 규정하여 개정('10. 3. 22)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

나. 배출부과금 부과에 따른 납부자의 권리 구제 강화를 위한 이의 신청기간을 연장(30일 » 60일)하고, 납부자의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납부제를 도입(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다. 심각한 경제적 손실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의 징수 유예기간 및 분할 횟수를 한시적으로(2009. 7. 1 ~ 2011. 6. 3.) 연장하여 규제를 유예하던 것을 영구화함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법령 · 정책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